

‘26. 7.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6-52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 실무자 중심의 포상제도로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위원 구성 및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항)
 - (원칙)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제2조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불가
 - (예외)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5조)
 -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임기 등
-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아.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 타 시·군 조례 발췌서(전주시, 포항시)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예산 및 지급내역
- 자. 현행 조례
-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8조”를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1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김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6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담당업무관련 국

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⑥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 ----- ---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영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김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	제2조(지급대상)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 ----- ----- ----- ③ ----- ----- -----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현행	개정안
<u>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u> 1. 2. (생략) ④ ~ ⑥ (생략) <u><신설></u>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생략)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생략) ② (생략)	제3조(지급기준)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공무원 제안 규정」 -----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u>4명부터 6명까지로</u> 구성하되 <u>성별균형을 고려한다.</u>	② ----- ----- <u>6명으로</u>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담당업무 관련 국장이</u> 되고, 위원은 <u>담당업무국 과장으로</u> 한다.	③ ----- <u>자치행정국장</u> -----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1. <u>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u>
<신설>	2. <u>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신설>	⑦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3)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세정과-7653 (2026.5.26.)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육가족과장 여

주무관	이미애	여성가족팀장	연가	교육가족과	과 전결 2026. 5. 28.
협조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8694	(2026. 5. 28.)	접수	세정과-7843	(2026. 5. 28.)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majvm6@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세정과-8758

제 목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세정과-7654(2026.05.26.)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조회기간 : 2026.05.26.(화) ~ 2026.06.05.(금) (11일간)
3. 조회결과 : 의견없음
4. 금후계획 :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 이행. 끝.

2026. 6. 15.

주무관

전설

징수팀장

이태철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세정과-8756

제 목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예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결과보고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예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5.22. ~ 2026.6.11.(20일)
3. 입법예고방법 : 김제시 시보(공고 제2026-648호) 및 김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6. 6. 15.

주무관

전설

징수팀장

이태철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전결 2026. 6. 29.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무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의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채

4.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평가대상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 문제점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경기 고양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

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

로채는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충남 천안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

장급(4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지

자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충남 천안시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개선방안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경기도 고양시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기준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

※ 관리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규정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참여를 명시

[타 기관 우수사례]

■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참고자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정비 대상

[표 4]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 현황

구분	① 포상금 지급 대상 제한기준	② 공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③ 부적격자 포상금 환수		④ 행정착오 포상금 환수	
			환수규정	이자가산	환수규정	이자가산
전북 군산시	미흡	미흡				
전북 익산시	규정없음	미흡				이자가산
전북 남원시	미흡	미흡		규정없음		
전북 김제시	규정없음	미흡				
전북 완주군	미흡	미흡				
전북 진안군	미흡	미흡				
전북 무주군		미흡		규정없음		
전북 임실군		미흡				

□ 참고자료 : 타 시 · 군 조례 발췌서(전주시, 포항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실(국)장이 되고,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포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참고자료 :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예산 및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연도	총예산액	집행금액	지급대상	비고
2025	16,390	16,390	읍면동 9개소 및 개인 8명	
2024	14,500	14,500	읍면동 10개소 및 개인 11명	
2023	11,500	11,500	읍면동 18개소 및 8명	

※ 지방세 징수포상금, 읍면동 세정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공무원

□ **현행 조례**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9. 29.]

[조례 제1142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6.7.15>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개정 2016.7.15>
3.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신설 2016.7.15>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6.7.15>
5. 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7.9.29>

② 영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9.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김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가. 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라.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바. <본항 전문 개정 2016.7.15>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결손 처분된 지방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본항 신설 2016.7.1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6.7.15>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6.7.15>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6.7.1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탈루된 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16.7.15>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6.7.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7.1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
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
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
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
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7. 12. 12 조례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6.조례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4.조례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42호> (타법개정 김제시 시세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와 김제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김제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 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영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법 제9조”로 하며, 제2조제3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법 제11조”하고,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을 “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방침결정문

지방청에서 지방청까지
비상하는 김제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김제시청장권대행 부 시 장	
문서번호		세정과 - 7199		전석		이재현		최재현 유한익 이희서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6. 5. 19.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결
재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자 치 행 정 국
세 정 과